

##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 2.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이하 ‘특약’ 이라 한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 이라 한다)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 라 한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한다.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 라 한다)를 청약할 수 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이며, 계약중지 청약일에 해당 개인실손이 유효한 경우

2) 상기 1)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 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이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나.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한다.

(예시)

| 보장종목(단체실손) |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
|------------|-------------------|
| 상해입원       | 종합입원              |
| 질병입원       |                   |
| 상해통원       | 종합통원              |
| 질병통원       |                   |
| 상해입원       | 종합보장형 또는 종합형      |
| 상해통원       |                   |
| 질병입원       |                   |
| 질병통원       |                   |
| 질병입원       | 질병보장형 또는 질병형      |
| 질병통원       |                   |

주)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특약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4.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가.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한다)를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한다.

\* 단체실손 종료일이란 중지된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단체실손에 가입·종료한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나.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다.

\* 주계약의 소멸 : ①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라.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중지시점의 상품으로 한다. 다만, 계약재개 시점 기준으로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한다.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마. 계약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하는 경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다.

바. 회사는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에서 정한 다음 각 요건의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또는 3)의 경우,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 동일한 조건이 없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개인실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 1) 보장종목
- 2) 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사. ‘바’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요건의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른다.

- 1) 계약자가 ‘바’ 의 각 요건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2)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재개를 청약한 경우
- 3)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계약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하여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아. ‘사’ 에서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승낙을 거절한 경우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된다. 다만, ‘사’ 의 1)의 경우에는 승낙이 거절되어도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되지 않는다.

## 5. 기타 사항

가. 회사는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

자에게 각각 안내한다.

- 나.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중지·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특별조건부인수특약」(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한다)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마.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 바.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4.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른다.
- 사.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아.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